단(團)의 역할과 조직적 특성의 원형 탐구

—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원칙」을 중심으로 —

이주연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단의 역할과 의미
Ⅲ. 단 조직의 특징
Ⅳ. 나가며
참고문헌

Ⅰ. 들어가며

본 연구는 불법연구회에서 단(團)이 수행했던 역할 및 단의 조직적 특성의 원형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31년(원기 16)에 발표된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이하 『통치조단규약』)의 「단규원칙(團規原則)」(이하 「원칙」)은 단의 이념과 운영 규칙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한 문헌이다. 『통치조단규약』「원칙」을 통해 상무기관과 단의 관계, 그리고 수위단의 역할과 이단치교(以團治教), 남녀 구별의 원칙, 재가와 출가 개념의 원형을 각각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교화단이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少太山 朴重彬 大宗師, 1891~1943, 이하 '소태산'이라 칭함) 재세시에는 어떠한 근간 위에서 토대를 마련하고 발전을 하였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불법연구회의 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장진영의 「원불교 교역자 제도 변천사 연구」[1], 장진수의 「불법연구회 교화단사: 단조직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2], 고시용의 「원불교 전무출신에 대한 연구」[3], 고시용의 「원불교의 조직적 특성」[4], 전흥배의 「원불교 교화단훈련의 대전환」[5], 장진영의 「불법연구회 의견제출제도 고찰」[6], 김현승의 「불법의 대중화를 위한 거진출진 제도의 의의와 활성화

1) 장진영, 「원불교 교역자 제도 변천사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46, 2010.
2) 장진수, 「불법연구회 교화단사 : 단조직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정신개벽』17, 2011.
3) 고시용, 「원불교 전무출신에 대한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48, 2011.
4) 고시용, 「원불교의 조직적 특성」,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55, 2013.
5) 전흥배, 「원불교 교화단훈련의 대전환」, 『원불교학』10, 2018.
6) 장진영, 「불법연구회 의견제출제도 고찰」, 『한국종교』49, 2021.

방안」[7] 등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그간의 선행연구들이 규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통치조단규약』의 「원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남녀 구별의 조직', '제3장 수위단(首位團)의 조직 급 선거 방식', '제4장 각 단의 조직', '제5장 조단의 방식과 번호', '제6장 조직 위원의 선거', '제7장 조단시(組團時) 예식(禮式)과 절부(節符) 단증(團證) 수여의 내역', '제8장 절부의 제작 급 절부 단증의 교체와 유실처분', '제9장 회의 급 가결 방식', '제10장 단원의 권리와 의무', '제11장 단장의 권리와 의무', '제12장 상벌', '제13장 의견안의 채용', '제14장 각 단의 통제도'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원칙」의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원칙」에 나타난 소태산 대종사의 본의를 크게 두 맥락에서 도출할 것이다. 첫째는 단의 역할과 의미에 관한 것으로, 상무기관과 단이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역할 분배를 하였는지 탐색한다. 그리고 수위단으로부터 저단에 이르는 모든 단의 구성원이 함께 '통치기관'의 주인이자 이단치교의 주체였던 점에 관해 논의를 할 것이다. 둘째는 당시 단을 조직할 때 근간에 두었던 특성에 관한 것이다. 불법연구회는 지금과 달리 남녀를 구별하여 조단하였으며, 재가와 출가에 대한 개념도 다르게 적용하였다. 그 시대적 배경과 개념적 차이를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의 교화단에 대한 이해와 실행은 불법연구회가 활동하던 시대의 그것과 꽤 많은 차이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소태산의 단에 관한 포부와 철학은 생활종교를 표방하며 과거 불교의 폐단을 혁신하려는 것이었고, 우리나라에 만연하던 구습을 타파하면서도 교단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이로써 불법연구회는 이상적인 공동체 운영의 표본을 제시하고, 사회적 모범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

Ⅱ. 단의 역할과 의미

1. 상무기관과 단의 관계

「원불교 교헌」에서는 '중앙총부'의 설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교단을 총관하기 위하여 중앙총부를 둔다.", "중앙총부에는 종법사와 수위단회, 중앙교의회, 교정원, 감찰원을 둔다.", "본교는 중앙총부 업무를 대행하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8] 등의 조항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교화단(敎化團)'을 조직한다. 「원불교 교헌」 제12조에서는 교화단에 대하여 "십인일단의 교화단을 조직하여 교화와 통치의 원활을

7) 김현승, 「불법의 대중화를 위한 거진출진 제도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107, 2026.

8) 「원불교 교헌」, 『원불교 헌규집』, https://won.or.kr/(검색일: 2026. 9. 22.).

기한다.”라고 설명한다. 원불교 교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중앙총부, 그리고 교화와 통치를 담당하는 교화단이 병존하며 원불교의 핵심 축을 이원적으로 이루고 있는 것이다.

불법연구회는 ‘상무기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역대 임직원 명부』를 보면 1924년(원기 9)부터 ‘서무부장’과 ‘연구부장’ 등 업무 직책에 따른 명단이 확인되기 때문에, 상무기관의 본격적인 시작은 1924년(원기 9)부터로 추정되며 이후 다양한 변천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로부터 3년 후인 1927년(원기 12) 『불법연구회 규약』에 실린 내용으로, 상무기관의 설립이 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 … 취지 · 규약 · 경전을 연습하기 위하야 교무부를 설립하고, 일과 이치를 연구하기 위하야 연구부를 설립하고, 모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야 서무부를 설립하고, 공부인 무산자(無産者)를 위하야 농업부를 설립하고, 공부인 공부하난 비용과 회원의 자녀 교육비와 본회를 창립하난 비용에 충용(充用)하기 위하여 저축 조합부를 설립하오니, 본회 제씨는 유시무종(有始無終)이 안되도록 모든 욕심과 모든 생각과 모든 정성을 이에 다하야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모든 일에 표준이 되야 주시기를 빌고 비나이다.[9]

이 해 불법연구회는 교무부, 연구부, 서무부, 농업부, 저축 조합부를 설립하였다. 이때는 『통치조단규약』이 발표되기 4년 전이었다. 이후 교정원과 서정원 등이 설립되고 그 하위 부서도 새롭게 재편된 바 있다. 1934년(원기 19), 상무기관의 직무는 아래와 같이 더 구체적으로 분담되었다.

> 제3장 각부의 직무
> 제6조 각부의 직무는 여좌 분담함
>
> 1. 교무부
> 교무부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장려감독하며 법설 역사 교과서와 각종 예문을 편집하고 회원입회 수속과 특별 통상회원 명부 급(及) 단명부와 일체도서를 관리하며 공부의 승강급과 각종 예식을 관리함.
>
> 2. 연구부
> 연구부는 공부인의 감각·감상·문목·의견·처리안 등을 모집 편성함
>
> 3. 통신부

9) 『불법연구회 규약』(1927).

통신부는 본회 공부 사업 양방면의 사업재료와 진행상황을 수집하야 각 기관지를 발행하며 기타 타부에 속(屬)치 안은 본회 각종 통신사무를 관리함

4. 감사부
감사부는 일반 회원의 공부 사업의 선 불선을 조사하야 상벌을 전형함

5. 서무부
서무부는 회산을 관리하고 세입세출 급(及) 경비예산과 회원의 사업성적을 편성하며 타부에 속(屬)치 안은 일체사무를 관리함

6. 산업부
산업부는 농공상의 각종 기관을 설치하고 본회 무산(無産) 공부인이 그 업(業)에 종사하야 그 수익으로써 정기공부에 전력케 함

7. 상조부
상조부는 본회 각부의 자산과 경비 예산금을 저축 식리(殖利)하며 회원의 근검저축을 장려하야 공부·사업·생활 삼방면에 편리를 득(得)케 함

8. 공익부
공익부는 본회 신제년사기념(新制年四紀念)과 제사 독기념(獨紀念)에 대한 헌공비와 혼례 급(及) 상장시(喪葬時) 절약금이며 성수(誠樹)의 수익과 불은미(佛恩米) 등 기타 소비절약을 장려하야 그 저축금이 상당할 시는 양로원 양유원(養幼院) 병원 기념관 등을 설립하야 본회 유공한 무자력자를 보호하기로 함

9. 육영부
육영부는 회원의 매월 단금과 매년 공동 작농을 장려하야 그 저축금이 상당할 시는 본회의 교리와 제도를 발전하기 위하야 인재양성에 주력하기로 함

10. 공급부
공급부는 회관 내 거주인과 각처에서 래왕인의 의복을 제조 세탁하며 식사를 공급함.
단, 각부의 강령 직무는 이상과 여(如)히 정하엿으나 하부(何部)를 물론하고 부(部)의 기관이 확장할 시는 각부의 세밀규약은 별(別)로 제작을 득(得)함[10]

교무부, 연구부, 통신부, 감사부, 서무부, 산업부, 상조부, 공익부, 육영부, 공급부가 각각의 직무를 분담함으로써 불법연구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 『불법연구회 규약』(1927).

소태산은 상무기관을 정착시키면서도 단 조직을 통해 회원들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및 감독하기 시작했다. 즉 불법연구회 운영의 양대 산맥을 구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설계 원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상무기관과 단, 이 두 가지 축이 병립하는 근본 취지는 어디에 있을까? 왕산 종법사는 2025년(원기 110) 정·항단 합동훈련에서 '교화단은 상무기관이 지향하는 제도와 교리, 규칙을 훈련해서 정신무장을 강화하는 곳'이라고 강조하며, 상무기관 또는 교화단 하나만으로는 원불교의 미래를 이끌 수 없다고 하였다. 상무기관이 직접적인 교단 운영을 주도한다면, 교화단은 상무기관에 적용되는 직위나 직급의 차이에 종속되지 않는 가운데 '단장과 단원'의 관계 위에서 불법연구회의 정신과 방향을 탐구하고 훈련하는 곳이었다. 소태산 재세시에도 두 기관은 그 역할에 차이를 가졌지만, 이렇게 이원화된 역할은 서로 보완 및 보조하는 기능을 통하여 병존하였다. 물론 상무기관이 불법연구회를 이끄는 핵심 기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단 또한 상무기관 못지않은 비중을 가지고 불법연구회의 정신적 토대를 형성했다.

소태산은 조단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과정은 장진수의 연구 「불법연구회 교화단사」[11]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단의 조직은 1924년(원기 9)부터 시작되었다. 장진수가 밝힌 단 조직 변천사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1924년(원기 9)부터 의견제출 제도가 단을 통하여 실시되기 시작했으며, 이로부터 '농업부 창립연합단'과 '인재양성소 창립연합단'도 발족했다. 각단 대표의 소집에 따라 단회도 개최되었고, 여기에는 일정한 형식과 절차도 존재했다. 이후 1928년(원기 13)부터 소태산은 새롭게 개정된 단규를 공표, 기존의 모든 단을 해체하고 두 번째 조단을 단행했다. 이제 모든 단이 농업부 창립사업 및 인재양성소 창립사업에 가담했으며, '단원일기조사법'도 시행되었다. 1930년(원기 15)에는 세 번째 조단이 이루어졌다. 전무출신 실행단의 분화, 갑종(甲種)과 을종(乙種)의 구분 조직이 진행되었고, '항장단(亢長團)'도 등장하였다. 『통치조단규약』이 발간된 1931년(원기 16)부터 네 번째 조단이 시행되었는데, 십인일단(十人一團)의 단법이 어느 정도 완성됨과 동시에 최상위단으로서 정수위단의 위상이 정립되었다.[12] 이와 같이 소태산은 1924년(원기 9)부터 1931년(원기 16) 『통치조단규약』 발간 시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조단을 시행하였다. 그러고 나서 『통치조단규약』 '본회통치조단총론'을 통해 조단의 근본적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 본회의 창립한 시일이 천단(淺短)한이만치 아직 각자의 공부를 완성하여 타인을 교양할

11) 장진수, 「불법연구회 교화단사 : 단조직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정신개벽』17, 2011.

12) 이 부분은 장진수의 논문 일부를 요약한 것임을 밝혀 둔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장진수, 「불법연구회 교화단사 : 단조직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정신개벽』17, 2011, 404-426쪽.

자격자가 없고 더욱이 회원은 원근각처에 산주(散住)하여 있음으로 종사주 단독(單獨)하신 힘으로서는 그 각지에 산주한 회원의 공부와 사업을 고로 훈련하기 어려운지라 고(故)로 이에 회원 구인(九人)으로 일단(一團)을 삼고 단장 일인을 더하여 단장은 종사주에게서 배운 그대로 자기 아래 구인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감독하게 하고 그 아래 구인은 또 자기 단장에게서 배운 그대로 매인하(每人下) 구인씩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이 단을 조직하려 함에 좌(左)와 같은 제반 법칙을 제정하였나니라.[13]

소태산이 모든 회원을 지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법을 변질 없이 각지 회원들에게 온전히 전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고안된 것이 '단'이었다. 그렇다면 '단'은 어떻게 소태산의 법을 각처에 전달 및 훈련시켰을까? 다음은 『통치조단규약』 발간 이후 단회를 진행했던 기록들이다.

· △8월 16일

오늘은 예회요 겸하여 단회일이었다. 오전 11시에 이동진화 씨의 죽비로 개회하고 김영신 씨가 출석원을 점명하니 16인이었다. 일동 심고와 법어 봉독이 있은 후 전례에 의하여 『단규』 설명을 할 것이나, 이번 종사주께서 상경하시어 출석하시므로 『단규』는 중지하고 금언옥설의 법문이 계시며 모든 대중은 칠년대한七年大旱에 단비를 만난 듯이 환희해 마지 않았다. 이로써 오전부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속회하여 단금 수입과 일기 조사를 마친 다음에는 경성지부에 관한 제반 공사가 있었으니 다음과 같다.[14]

· △9월 16일

오늘은 부산출장소 창립 제40회의 예회 겸 단회이다. 오전 11시 양원국 씨 사회로 출석원을 점명하니 남녀 합 24인이었다. 양원국 씨의 정례 심고와 법어 봉독을 마친 후 이공주 선생의 『단규』 설명이 있고, 종사주께서 다시 『단규』 강령을 들어 설명하시니 대중은 일제히 송덕頌德하고 휴회하였다가 오후 속회하여 단금을 수입하고 태조사를 마친 후 산회하니 3시 반이었다.[15]

· △1월 16일

오늘은 본회 창립한도 제2회 내 제176회의 예회며 겸하여 정수위단회였다.

오전 10시에 박대완 씨 사회로 개회하고 출석원을 점검하니 남녀 합 71인이었다. 드디어 사회의 간단한 심고에 관한 설명이 있고 심고, <단회가>, 법어 봉독을 한 후 전음광 씨의 ≪월보≫ 보고가 있었다. 다음에는 「정신을 개혁해야 한다」는 문제로 송규 씨의 감상담을 듣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속회하여 전음광 씨의 인재양성단 취지 설명으로부터

13)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1931년).
14) 『월보』 39호(1932년 8월); 원불교기록유산사업단 편, 『원불교 기록유산 총서』 제6권, 원불교출판사, 2023, 109쪽.
15) 『월보』 40호(1932년 9월); 원불교기록유산사업단 편, 『원불교 기록유산 총서』 제6권, 원불교출판사, 2025, 155쪽.

단금 수합, 의견 심의, 성적 조사 등을 행하고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5시경이었다.[16]

불법연구회의 단회 진행에는 '성적 조사', '태조사' 등의 순서가 빠짐없이 존재했다. 이는 단 활동을 통하여 상시훈련을 체계적으로 이어갔음을 의미한다. 현재 교화단에서는 비교적 단장이 단원의 상시훈련 방법을 지도하며 그 성의를 권면하는 훈련이 되지 않는데 비해[17], 초기 단의 원형에서는 상시훈련이 단 활동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렇게 진행한 성적조사의 결과는 이후 교무부에 보고되었다.

4. 단원성적조사법
매월 16일에 1회씩 단원의 성적을 조사하난 바 단장이 유(有)한 단(團)에난 단장이 하고 무(無)하면 중앙교주(中央敎主)가 대리로 시행하야 매년 음 12월 26일에난 본회 교무부에 보고함. 조사하난 표준양식은 여좌(如左).<*표준양식은 ''원문보기'' 참조>
△ 조사 년월일
△ 출석
△ 공부성적 (좌선 · 염불 · 교과연습 · 취사실행)
△ 사업성적(정신근고(精神勤苦) · 육신근고(肉身勤苦) · 금전혜시(金錢惠施))
△ 의견제출(공부방면 · 사업방면 · 생활방면)
우(右) 시행일할(施行日割)은 내(來) 16일 위시(爲始).
갑을병정무불 (甲乙丙丁戊不)로 조사하난 방식은 추후 발표하겟삼.[18]

매월 단회에서 단장이 단원들의 성적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교무부에 보고하는 방식이었다. 이때 준용해야 하는 표준양식이 있었던 걸로 보아, 성적 보고는 당시 필수적이고 공식적인 절차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교무부가 취지 · 규약 · 경전을 연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었던 한편, 이 과목들의 직접적인 '훈련'이 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교무부는 상무기관으로서의 역할, 즉 각 단의 보고사항을 수합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16) 『월보』 44호(1933년 계유); 원불교기록유산사업단 편, 『원불교 기록유산 총서』 제6권, 원불교출판사, 2025, 383쪽.
17) 전흥배, 「원불교 교화단훈련의 대전환」, 『원불교학』10, 2018, 130쪽.
18) 『월말통신』 제1호(1928년 5월); 원불교기록유산사업단 편, 『원불교 기록유산 총서』 제1권, 원불교출판사, 2023.

> 총본부에서는 음 4월 초 6일까지만 6일로 예회를 보고 5월 27일(음 4월 15일)부터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여 매주 일요일로 예회를 보기로 한바 첫째 일요일에는 오전만 보기로 하고, 둘째 일요일에는 단원회로 정하여 오전 오후를 다 보기로 하고, 셋째 일요일에는 오전은 예회 오후는 각 단장이 단원의 일기 성적조사를 하기로 하고, 넷째 일요일에는 또한 오전만 보기로 한바, 다섯째 예회에는 교무부에서 법설, 경의 강론 혹은 강연, 감상담을 하여 각 회원에게 공부와 사업의 자료를 일러주고, 끝에 일요일에는 회원 각자 경전 내에서 모르는 곳이나 혹은 의심나는 일을 묻기도 하며, 또는 경과도 보고하고 감각 감상 처리건도 이야기하여 일개월간에 공부한 것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19]

위 글은 1934년(원기 19) 『회보』 제9호에 실린 내용이다. 매주 일요일에 예회를 보았는데, 둘째 일요일에는 '단원회'의 형태로 보았고 셋째 일요일에는 각 단장이 단원들의 일기 성적조사를 하였다. 위 글로부터 우리는 단장이 단원 개개인의 일기 상황을 단회 시간에 조사하는 것을 필수 사항으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단원의 공부를 관리, 감독하는 것은 단장의 권리이자 의무였다. 그렇다 보니 『통치조단규약』에 기술된 단장의 책임은 '해단원의 공부와 사업의 선 불선을 조사하여 지도감독하는 것', '매년 연말에는 단원의 12개월 공부사업의 성적과 신분검사를 일일이 시행하여 이상 단장에게 보고하고 이상 단장은 갱히 교무부에 보고하는 것'이었다. 『불법연구회 회규』에도 단장의 권리와 의무는 비슷하게 기술되어 있다. 단장은 "해단원의 공부 사업의 성적을 조사하야 지도 감독"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말에는 단원의 1년간 공부 사업의 성적을 조사하고 신분검사를 시행하여 상항을 교무부에 보고"했다.[20] 단장은 단원들의 공부를 관리 및 감독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교무부에 보고하는 절차가 존재했던 것이다. 한편, 교무부에서 단장들에게 단원의 일기 조사를 요청한 기록도 발견된다. 『회보』 제59호에는 교무부에서 올린 다음의 요청문이 수록되어 있다.

> 본회 단규세칙 제50페지 교과서 연습에 대한 조사방법은 본회 전(前)규약서를 표준하야 제정된 것임으로 금반(今般) 기후(其後)에 편집된 육대요령, 수양연구요론, 혁신론, 삼대요령, 단규, 예전, 회원수지 회규 등의 전권(全卷)책 장수를 분할하야 단장 조사방법을 제정 하였사오니 각 단장 제씨는 좌기 방식에 의하야 매월말 단원의 일기조사를 하시기 바래나니다.[21]

19) 『회보』 제9호(1934년 7월).
20) 『불법연구회 회규』(1942).
21) 『회보』 제59호(1939년 9월).

이와 같이 불법연구회에서 단을 운영하는 방식은 단원이 자신의 공부 및 사업 상황을 단장에게 보고하고, 단장은 이를 교무부에 보고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유무념 조사와 상시일기 조사가 단장을 통해 교무부로 보고되는 연속적 점검 체계는 공부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공부가 개인의 자율에만 맡겨지지 않고 공동체에서의 지도와 점검 속에서 이루어진 특징이 있었다.[22)]

결론적으로, 상무기관과 단의 역할은 철저히 구분되어 있으면서도 긴밀한 연속선상에 놓여 있었다. 이원화된 두 기관의 병존에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단장'이었다. 불법연구회에서 단장의 역할은 개인의 공부 및 사업을 공동체 공통의 공적 공부 및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이었다. 개인의 공부 과정과 결과가 사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공적인 것으로 확장됨으로써, 불법연구회의 공동체 문화와 공부 풍토가 정착할 수 있었다. 단장의 역할은 이 일련의 과정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 보니 단장들의 모임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단장들은 '단장회'를 통해 단 운영의 방향과 지침을 함께 모색하였다. 『회보』에 남아 있는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 [영광지부] 본일 예회는 오창건씨 사회 하 제반순서를 마친 후 「참 영리한 사람」이란 제(題)로 송도성씨의 강연과 이군일, 조원선 양씨(兩氏)의 감상담이 있었고 휴회하였다가 오후에는 단장회를 마친 후 폐회하다.[23)]
> · [신흥지부] 본일은 오전 9시에 이홍순씨 사회 하 각항 순서를 밟은 후 각인(各人)의 경강과 김홍철씨의 일기법 설명이 있었고 태조사를 마친 후 잠깐 휴회하였다가 다시 속회하여 단장회를 마치고 폐회하다.[24)]

『통치조단규약』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장은 소태산으로부터 배운 그대로 아홉 단원의 공부와 사업을 지도 및 감독했다. 그리고 단원들 또한 단장에게서 배운 그대로 아홉 명의 단원을 지도 및 감독했다. 소태산은 『통치조단규약』을 발표하던 시기까지 총 4차에 걸쳐 조단을 단행하였다. 제1회 조단 당시에는 단장이 없이 중앙대표와 8인 단원으로 구성하였고, 제2회 조단을 통해 32인의 단장이 출현했다. 이어서 제3회 조단에서는 항장단까지 구성되었고, 이어서 『통치조단규약』 발표와 맞물려 진행된 제4회 조단에서는 드디어 최상위단인 정수위단이 등장하면서 최상위단으로부터 하위단에 이르기까지 상하가 연결된 전체 조단이 완성되기에 이르렀다.[25)] 이는 단의 운영을 총괄할 핵심 리더들을 '수위단'이라는 이름으로 배치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단순히 단의

22) 이혜성, 『소태산의 신룡전법기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6, 249쪽.
23) 『회보』 제27호(1936년 8월).
24) 『회보』 제30호(1936년 12월).
25) 장진수, 「불법연구회 교화단사」, 『정신개벽』17, 2011, 429-430쪽.

운영을 향한 비전만이 아닌, 상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연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내포되어 있었다. 단의 역할은 공부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도 및 감독하고 함께 훈련하는 데에 있다. 이 역할을 상무기관의 운영과 긴밀하게 병행하는 것이 소태산의 본의였던 것이다.

2. 수위단과 이단치교(以團治教)

정산 송규 종사(鼎山 宋奎 宗師, 1900~1962, 이하 '정산'이라 칭함)는 "중앙에서는 수위단회의 위신과 직능을 더욱 강화하여 교단 통치의 핵심체를 삼으며, 각 교당에서는 교화단 조직을 강화하여 이로써 공부 사업 촉진의 기관을 삼는다면 사반 공배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되리라."[26]고 강조하여. '이단치교(以團治教)'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원불교 교헌」에서는 "본교本教는 십인일단의 교화단을 조직하여 교화와 통치의 원활을 기한다."[27]라고 적시하여, 교화단이 교화뿐 아니라 교단을 통치하는 기능도 수행함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원불교의 모든 교화단을 관리, 감독하는 최상위단인 수위단은 교화와 통치의 가장 선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위단은 원불교 교화방법의 특징인 '이단치교'의 결정체이다. 그리고 교단 행정수반을 비롯해서 교단을 통치해 가는 모든 인원이 교화단 구성원의 일원이라고 할 때, 결국 수위단에 의해 교단 전반이 통치되는 셈이다.[28]

소태산은 최초의 단을 조직하며 "이 단은 곧 시방 세계를 응하여 조직된 것이니 단장은 하늘을 응하고 중앙(中央)은 땅을 응하였으며 팔인 단원은 팔방을 응한 것이라, 펴서 말하면 이 단이 곧 시방을 대표하고 거두어 말하면 시방을 곧 한 몸에 합한 이치니라."[29]고 하였다. 여기에서 단 조직의 목적은 "시방 세계(十方世界) 모든 사람을 두루 교화"하는 것으로, 수위단은 '시방(十方)'을 대표하는 최상위의 통치기관이다.

고시용은 원불교 단 조직의 특성으로 ①소태산의 주도적인 구상에 의한 단 조직 원리와 운영원칙 확립, ②공개적인 절차를 통한 단체결성, ③체계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교단 발전 도모, ④조직의 결성 원리와 체계 및 운영방법에 대한 성문법 마련[30]을 들고 있다. 『통치조단규약』에서 밝히고 있는 수위단의 조직과 자격, 운영에 관한 내용은 특히 이 네 가지 특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통치조단규약』을 발표한 이유가 소태산 혼자만의 힘으로 전국 각지의 많은 회원을 지도할 수 없기 때문이었던 데다, 이 문제를

26) 『정산종사법어』 제2부 법어 제4경륜편 10장.
27) 「원불교 교헌」, 『원불교 헌규집』, https://won.or.kr/(검색일: 2026. 9. 22.).
28) 고시용, 「원불교의 조직적 특성」,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55, 2013, 19쪽.
29) 『대종경』 제1 서품 6장.
30) 고시용, 「원불교의 조직적 특성」,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55, 2013, 12쪽.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제도가 '단'이라는 조직 체계이며 그 집약체가 바로 수위단인 것이다. 수위단은 단 조직에 담긴 소태산의 본의를 바탕으로 투명한 조직절차, 그리고 교단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운영과정 등을 그대로 담지한 대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수위단이라는 명칭은 언제, 어디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했을까? 교서상으로는 1931년(원기 16) 발간된 『통치조단규약』에서이며, 실제로 그 이전의 조단 과정에 공식적으로 등장하진 않았다. 1931년(원기 1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단원회(團員會)-단장단회(團長團會)-정수위단회(正首位團會)로 이어지는 상하 소통의 단 조직이 완성되었으니, 여러 차례에 걸쳐 단 조직을 단행한 것도 수위단까지 연결된 조단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이라 볼 수 있다.[31]

『통치조단규약』에서는 수위단의 조직에 관하여 "본 단의 목적을 총감(總監)하기로 정수위단(正首位團)이라 명칭하고, 남자로 1단, 여자로 1단을 조직하야 모-든 단의 원시(原始)가 되기로 함."[32]이라고 밝히고 있다. 단의 목적을 '총감'하기 위해 조직된 수위단은 통치기관으로서의 핵심 주체였다.

『통치조단규약』에서는 정수위단원의 자격으로 교리에 대한 이해, 사업에 대한 기여와 공로, 시비를 판단하는 안목, 두터운 신망과 실천력, 그 외 제반 상식 등 어떤 면으로든 단원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33] 그리고 정수위단원이 노쇠, 열반, 질병, 탈퇴 등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해 예비수위단 3개 단(갑·을·병)을 조직하도록 했다.[34] 정수위단원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예비수위단 중 가장 적합한 자가 대리하며, 예비수위단의 결원은 전무출신 실행단 또는 거진출진 단원 중 가장 적합한 자로 보충했다.[35] 한편 갑종 예비수위단은 전무출신 실행단원 중 미혼자로, 을종 예비수위단은 실행단 및 거진출진 단원 중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기혼자로, 병종 예비수위단은 거진출진 단원 중 가장 적합한 자로 조직했다.[36]

위 내용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정수위단원은 열반 또는 탈퇴 시에만 그 결원을 보충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반면 예비수위단원은 탈퇴나 열반이 아닌 다른 사유에

31) 장진수, 「불법연구회 교화단사」, 『정신개벽』17, 2011, 408쪽.
32)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1931년).
33) 제8조: "정수위단의 자격은 교리에 대한 이해나 사업에 대한 공훈(功勳)이나 시비에 대한 언론이나 신망 실행(信望實行)이나 그 외 엇더한 상식(常識)으로든지 단원내 제일 우월한 자로서 조직함."
34) 제9조: "정수위단원이 혹 노쇠, 열반, 병고, 탈퇴의 경우에 달하여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직히지 못할 시는 차를 대리(代理)하기 위하야 예비수위단 3단을 조직하되 갑 · 을 · 병 3단으로 함."
35) 제10조: "정수위단원이 의무와 책임을 직히지 못하게 될 시는 예비수위단내에 제일 적당자(適當者)로써 차를 대리하고, 예비수위단원은 전무출신 실행단 혹은 거진출진 단원내 제일 적당자로써 차를 보결(補缺)함."
36) 제11조: "갑종 예비수위단은 전무출신 실행단원내 미혼자로, 을종 예비수위단은 실행단(實行團) 급 거진출진(居塵出塵) 단원내 기혼자라도 자유 생활을 득한 자로, 병종 예비수위단은 거진출진 단원내 제일 적당한자로써 조직함."

의해서도 결원 보충이 가능했다. 혹 직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실행단 및 거진출진 단원 중 기존 단원보다 우수한 자가 나타나면 기존 단원을 다른 단으로 전출시키고 그 우수한 자로 보충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37] 정수위단원의 권한과 의무는 생명의 유지나 수위단 소속 여부 등 절대적으로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다. 통치기관으로서 단의 핵심주체인 수위단, 그 중에서도 수위단의 핵심인 정수위단원이 이렇게까지 대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원불교100년총람』에서는 "수위단회가 비록 최고의결기관이기는 하지만 그 정신은 보다 심원(深遠)한 데에 있다."라고 하며, "수위단의 정신은 소태산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무여한의 무아봉공정신에서 출발했고, 시방세계 일체생령을 남김없이 제도하겠다는 간절한 서원을 근본 바탕으로 삼는다."[38]라고 말한다. 수위단은 소태산의 교법이 온전히 전 세계에 전해지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직체로서, 소태산의 정신을 하위 단원들에게 그대로 계승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수위단의 '통치'는 정신개벽을 달성하는 것에 깊이 연관된다.

그러므로 소태산이 지향했던 '통치'는 정치적 의미에서의 '통치'와 다르다. 정치적 '통치'는 국가 또는 주권자가 구성원을 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물론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통치'는 사회적 주체들이 수평적으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변모된 점은 있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치적 '통치'가 외형적 질서 유지나 제도적 관리에 국한되는 반면, 수위단이 가진 기능으로서의 '통치'는 정신개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앙·수행의 공동체 문화를 향도해 감과 동시에 행정적 차원에서의 질서 유지와 발전도 함께 이끌어가는 양면적 의미를 담지한다.

> 4. 교육통일의 기관
> 현하 본회의 위치가 점고(漸固)함을 따라 공부에 발원하는 동지가 많음으로써 공부를 전문하여 교육계가 있게 되었으며 그 교육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 중 사업계 일부분이 출현되었나니 이 다수의 동지를 유루(遺漏) 없이 훈련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하고자 하며 이 사업계를 결함 없이 확창(拡昌)하여 교육의 영원한 기초를 정하고자 하면 이를 통치할 만한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며 더욱이 다수의 동지자를 종사주 단독히 지도하기로 하면 역불급의 일이므로 시창 2년 정사추(丁巳秋) 제1회 기성단 조직의 전례에 준하여 지방을 따라 회원 9인을 모아 일단을 삼고 단장 일인을 가하여 이 구인의 공부계에 사업계를 지도감독하게 하며 이 구인은 또 자기 매인(每人) 아래 9인만 지도 감독케 하여 이와 동일하게 아래 회원을 물론하고 의무적으로 구인지도의 책임을 부담케 되었나니 회원

37) 제14조: "정수위단원은 열반 혹 탈퇴시에만 한하야 차를 보결하고 예비수위단은 실행단과 거진출진 단원내에서 본 단원에 우월한 자가 (生)할 시는 탈퇴 열반이 안인 시도 본 단원을 타단(他團)으로 이전하고 기(其) 우월한 자로써 차를 보결함."

38) 원불교100년총람편집위원회 편, 『원불교100년총람』, 원불교출판사, 2017, 183쪽.

> 수가 천만인에 달하더라도 상하단장을 통하여 항상 자기 소속의 9인만 지도하게 됨으로 가장 용편(容便)하게 되었다.[39]

이 글은 1928년(원기 13)에 발행된 『사업보고서』의 일부이다. 『통치조단규약』의 발표로부터 3년 전이었던 이때에도 '통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여기서 단은 본래 회원들의 '교육기관'으로 구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교육, 훈련, 공부란 용어는 거의 동의어로 사용된 것이다. 단을 '교육통일의 기관'이라 하고 있으며, '통치'란 표현도 회원들의 공부와 사업을 고루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지도감독한다는 의미를 가졌다.[40] 다음은 『통치조단규약』 발표로부터 1년 후인 1932년(원기 17) 『월보』에 실린 기록으로, 이를 통해 당시 정수위단회를 개최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 오늘은 본회 창립한도 제2회 내 제161회의 예회 겸 정수위단회일이었다. 오전 9시 반 전음광 씨 사회로 개회하고 송봉환 씨가 출석원 점명을 하니 남녀 합 53인이었다.
> 정례의 심고, <단원가>, 법어 봉독이 있은 후 『단규』 강의에 들어가 전음광 씨 주문主問으로 남녀 대중이 윤회 문답하고 정오 12시에 휴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회하여 전음광 씨의 인재양성단 취지 설명과 단금 수합이 있은 후, 진안 만덕산 농업부 출장소원 이보국, 이준경, 전구일 씨 등이 제출한 감각, 감상, 문목, 의견 등을 심의 결정하고, 종사주와 은부시녀 결의한 정라선 양의 결의 원서를 더한층 명념銘念하기 위하여 대중 앞에 낭독하고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5시 반이었다.[41]

이날 정수위단회는 '개회 – 출석원 점명 – 심고 – 단원가 – 법어봉독 – 『단규』강의 – 문답 – 인재양성단 취지 설명 – 단금 수합 – 감각·감상·문목·의견 심의 결정 – 은부시녀 결의 원서 낭독 – 폐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강의와 문답, 감각과 감상 등의 심의 결정을 비롯한 공부 절차 외에, 단금 수합과 같이 사업에 관한 부분도 함께 다루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통치조단규약』에서는 정기 정수위단회를 매월 16일 개최하여 본회 정기 예회를 대행하며 각 단회에서 제출한 의견(意見), 처리(處理), 감각(感覺), 감상(感想), 문목(問目) 안과 기타 일체 안건을 정수위단원 반수이상의 동의로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본 총회 및 평의원회(評議員會)에 제출했으며, 단, 필요하다고 인정(認)할 시에는 정수위단장이

39) 「교무부 제1회 공부인훈련보고서」, 『시창13년도 사업보고서』(1928).
40) 장진수, 「불법연구회 교화단사 : 단조직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정신개벽』17, 399쪽.
41) 『월보』 제39호(1932년 8월호); 원불교기록유산사업단 편, 『원불교 기록유산 총서』 제6권, 원불교출판사, 2025, 105쪽.

언제든지 소집하여 개최하도록 했다.[42] 이때의 '의견, 처리, 감각, 감상, 문목 안과 기타 일체 안건'은 공부와 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었다.

<감각>

원기 17년(1932) 7월 16일

남자 갑종 예비수위단 간방원

제출인 전구일

총부 연구부 귀중

「무슨 일이나 모를 때는 미신이요 알고 보면 미신이 아닙니다」

저는 어느 날 어느 동리 길을 걸어 가게 되었는데 웬 사람 하나가 길가에 있는 밭 속에서 가지 잎을 따서 자꾸 길가에 버립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왜 그러냐고 물으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가지 잎을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가에 버려서 여러 사람이 밟고 다니면 그 밟고 다니는 사람 수와 같이 가지가 주렁주렁 많이 연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문득 한 의심이 나기를 '과연 그러할 것인가? 사람이 밟고 간다고 그 사람 수대로 열 것인가?' 하였으나 …(중략)… 이 세상은 이른바 미신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늘을 공경하라, 귀신을 공경하라, 우상을 공경하라, 심지어 무정한 목석과 산수를 섬기라 우대하라는 등등 별별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구자는 그것을 한 미신으로 도외시할 것이 아니라 그 본의를 해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신인 것 같지만 미신 아닌 점을 발견하고, 미신 아닌 것 같지만 참으로 미신인 점을 발견해서, 정의 인도를 밝혀야 되겠다는 느낌이 났습니다.[43]

<의견>

원기 17년(1932) 7월 16일

남자 을종 예비수위단 건방원

제안인 이보국

총부 연구부 귀중

<장추場帚 종자 식부植付 사용의 건>

우리는 이 사업을 창립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절약하고 긴축하자는 목적을 가졌으므로, 이것은 소소한 일 같지만 경제상 일조가 될까 하여 이에 졸견拙見을 제출하나이다. 다름이 아니라 총본부 회관은 가옥이 많고 …(중략)… 만일 이 의견이 가결된다면 그

42) 제43조: "정기 정수위단회는 매월 16일로 개최하야 본회 정기를 예회 대행(代行)하며 각 단회에서 제출한 의견(意見), 처리(處理), 감각(感覺), 감상(感想), 문목(問目) 안과 기타 일체 안건을 정수위단원 반수이상의 동의로 채용 여부를 결정한 후, 본 총회 급 평의원회(評議員會)에 제출함. 단, 필요로 인(認)할 시는 정수위단장이 하시든지 소집 개최함."

43) 『월보』 제38호(1932년 7월호); 원불교기록유산사업단 편, 『원불교 기록유산 총서』 제6권, 원불교출판사, 2025, 41-42쪽.

싸리 종자는 이곳 만덕산에서 받아 보내겠습니다.
명철한 심의를 빌고 이를 토의에 부침.[44]

「원불교 교헌」에서 밝혔듯 수위단이 교화와 통치를 모두 관리 및 감독한다고 할 때, ‘통치기관’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이미 교화와 통치를 통합한 표현으로서의 ‘통치’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해석된다. 소태산이 단 조직을 시행하며 ‘통치기관’이라는 개념을 부여한 목적은, 교화와 통치가 서로 분리되거나 양립된 의미가 아닌, 교화가 곧 통치가 되고 통치가 곧 교화가 되도록 하려는 데 있었다.[45] 단을 통해 공부와 사업에 관한 ‘의견, 처리, 감각, 감상, 문목 안과 기타 일체 안건’을 다룸으로써 단원들의 공부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이로써 교화와 통치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교화와 통치의 통합적인 양상은 ‘이단치교’의 또 하나의 특색을 드러낸다. 바로 하위 단원들에 의한 통치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렇게 단을 통해 제안되는 의견이 실행으로까지 이어진 과정은 ‘아래로부터의 길’[46]을 통한 공화제도의 일면이었다. 불법연구회는 단원이 제출한 의견으로 상급 단장의 심의를 거쳐 수위단의 감정으로 채용 결정을 얻은 것이나 수위단원이 제출한 의견으로 수위단 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채용된 의견이라도 본회의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인 중대 안건은 상무기관이 소집한 총회 또는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결된 뒤에 시행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지방 최고 단장회의 심의와 해당 지방 교무의 감정을 얻을 시에는 상무기관의 총회 및 평의원회의 가결이 없을지라도 즉시 실행하고, 연도 말 총회에 보고하면 이미 실행된 의견이라도 총회에서는 변경 또는 개선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들은 단 자체가 통치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단원들이 불법연구회의 통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47]

따라서 이 점은 불법연구회가 추구했던 공화제도의 특성을 면밀히 드러낸다. 단회를 진행할 때 의견제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주체는 불법연구회의 일원인 개별 단원들이었다. 단원들이 제안한 의견이 단원회, 단장단회, 정수위단회를 거쳐서 의결

44) 『월보』 제38호(1932년 7월호); 원불교기록유산사업단 편, 『원불교 기록유산 총서』 제6권, 원불교출판사, 2025, 43쪽.
45) 장진수, 「불법연구회 교화단사 : 단조직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정신개벽』17, 2011, 400쪽.
46) 장진영, 「불법연구회 의견제출제도 고찰」, 『한국종교』49, 2021, 81쪽.
47) 제52조: “단원의 제출한 의견으로 이상 단장의 심의를 거쳐 수위단의 감정으로 채용의 허가를 얻은 것이나, 수위단원의 제출한 의견으로 수위단 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채용된 의견이라도 본회 지방적 우(又)는 전체적 중대 안건은 상무 기관의 소집한 총회 우는 평의원회의 심의를 경(經)하야 가결된 뒤에 시행함.”
제53조: “본회 전체 우는 지방적이라도 중대 안건이 안이고 세부의 긴급한 의견으로서 해 지방 최고 단장회(團長會)의 심의와 해 지방 교무의 감정을 득할 시는 상무기관의 총회 급 평의원회의 가결이 업슬지라도 즉시 실행하고, 연도 말 총회에 보고하면 이미 실행된 의견이라도 총회에서난 변경 혹 개선하기로 함. 단, 우와 여히 채용 방식을 정하엿으나, 본회 창립한도 제3회 36년내에는 최고 정수위단의 단장 허가로만 채용함도 유(有)함.”

및 시행되었던 과정은, 정수위단원뿐 아니라 하위 단의 구성원들 또한 '이단치교'의 핵심 주체, 즉 '통치'를 실행하는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정산은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세 가지 큰 요소로 '일원주의', '공화 제도', '십인 일단의 단 조직'을 들었다.[48] 일원주의를 바탕으로 한 십인 일단의 단 조직은 곧 공화제도의 구현으로 이어졌다. 소태산은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고 수행하는 가운데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와 공부의 요도 삼학 팔조를 밟아 나가게 하면서, 이를 단이 실행하는 공화제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만약 단이 단원들의 공부와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기능만 가졌더라면, 원불교는 생활종교, 개혁 종교로서의 특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통치'로서 이단치교 정신을 실현했던 불법연구회의 공화제는 실질적인 삶의 혁신을 추구했으며, 이러한 공동체 풍토는 물질개벽 시대의 정신개벽을 열어가는 토양을 마련하였다.

Ⅲ. 단 조직의 특성

1. 남녀구별과 여성의 권리신장

현재 교화단은 성별의 차이를 단 조직의 기준으로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조직 방식이 처음부터 정착한 것은 아니었다. 초기 불법연구회의 조단 방식은 남녀의 구분을 근간으로 하였으며, 지금과 같이 남녀 혼성으로 조직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약 35년 전인 1992년(원기 77) 부터였다. 한편, 소태산이 본격적으로 남녀를 분리하여 조단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원기 15)부터였다.

> 종사주 조단에 착수하옵서 전에 남녀합조合組한 각단을 전부 분계分界하야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조직하옵시고 이여서 남자정수위단내 무성의한 자 삼인에 대리인을 세우고 동시에 여자정수위단을 조직하사 책임이행이 불능한 자는 시時대리인을 세우도록 하시며 남녀예비수위단을 갑을병 삼종으로 일단식을 각각 조직하옵시다.[49]

이후 1931년(원기 16)에 『통치조단규약』을 발표하면서 '남녀 구별'을 단 조직의 원칙으로 정식 공표하였다. '단규원칙'에 '제2장 남녀 구별의 조직'을 우선 제정할 만큼, 다음과 같이 여성과 남성을 구별할 것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한 것이다.

48) 『정산종사법어』 제2부 법어 제13 도운편 22장.
49) 「제1회 특별상황보고서」, 『시창15년도 사업보고서』(1930).

제5조 회원으로 단을 조직할 때에는 남녀를 구별하여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단을 조직하고 공부와 사업의 기관도 각각 설치하기로 함. 단 남녀 구별 조직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이 부족한 경우는 합동 조직함을 득함.
제6조 남녀 각 단을 구별하여 조직시라도 남녀 상무 기관이 분립하기 전에는 단 사무의 취급 관리는 기성 상무 기관에서 임시 합동 집행함을 득함.

단을 조직할 때 남녀를 구분했던 이유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두 가지 시대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가지는 우리나라에 깊이 스며들어 있던 유교적 관습이다. 지금과 달리 당시만 해도 남녀가 한 공간에서 종교적 회합을 하는 것 자체가 풍기를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될 수 있었다. '남녀칠세부동석'의 정서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던 근대 사회에서 혼성 모임은 사회적 오해나 관헌의 탄압을 불러올 위험이 컸다.

이밖에 성별의 구별을 단 조직의 핵심 원칙으로 삼았던 또 하나의 이유로, 당시 신종교들이 피할 수 없었던 유사종교 프레임을 들 수 있다. 이 프레임을 제공한 대표적 사례가 백백교다. 백백교는 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폭력과 살인을 서슴없이 자행함으로 인해 여타의 '신종교'들을 감시와 탄압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범죄 집단이었다. 백백교의 사회적 여파는 불법연구회도 피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래서 『대종경선외록』에서도 당시 상황을 두고 "대개의 유사 종교들은 금전 문제 아니면 남녀 관계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일조 일석에 탄압이 진행되어 불법연구회 하나만 남게 된 실정"[50]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백백교의 만행이 폭로된 해가 1930년(원기 15)이었음을 고려하면, 『통치조단규약』이 발간된 1931년(원기 16)의 분위기는 일제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불법연구회가 남녀의 분리와 구별에 유의했던 흔적을 좀 더 찾아보자. 1934년(원기 19) 발행된 <회보> 제10호에서는 '관규(館規)'로 「남녀 간 교제에 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남자로서 여자만 거주하는 장소에 가지 말며 부득이 갈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실내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
2. 여자로서 남자만 거주하는 장소에 가지 말며 부득이 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실내는 들어가지 않을 것.
3. 남녀가 단둘이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대화하지 말 일.
4. 남녀가 부득이한 경우 동반하여 가게 될지라도 보조(步調)를 같이하지 않을 것.

50) 『대종경선외록』 21.교단수난장 7절

5. 연소한 남녀 간에는 번거한 인사를 폐하되 부득이 할 말이 있을 때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간단히 할 것.
6. 연소한 남녀 간에 부득이 할 말이 있을 때에는 김기천, 이재철, 유허일, 김남천, 문정규, 송규, 오창건, 조대진 8인 중 누구라도 소개 또는 입회하에 행할 것이며 여자계에는 전삼삼, 양하운, 김정각, 이성초, 이강련화, 손학경, 이청춘 8인 중 누구라도 소개 혹은 입회하에 행할 것. 단, 앞에 기재한 남녀 16인 중이라도 상호 할 말이 있는 때나 타인의 소개 혹은 입회할 일이 있을지라도 실내에 들어갈 수 없음.
7. 앞 조항의 남녀 16인을 만나지 못할 때 부득이한 경우 남녀 간 할 말이 있을 때는 필히 공공연한 장소를 선택하여 행함은 무방할 것으로 함.
8. 앞에 기재한 여섯 조항에 범과 되는 행동을 발견한 때는 남녀를 물론하고 발견한 당인이 즉시 이 사유를 종법원 신고함에 기재 투입하며, 만약 문맹자는 직접으로 종법원에 비밀리에 사뢰기로 함.
9. 범과자를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자의 범과 사유를 종법원 외 다른 곳에 누설 전파하는 때는 범과자와 동일한 범과자로 취급할 것.
10. 동일인에 대하여 범과 신고가 세 차례에 달할 때는 대중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성토를 행함.[51]

당시 불법연구회는 이 관규를 제정하며, “어느 사회나 물론하고 남녀의 교제가 무난한 중 혹 상서롭지 못한 일이 있는 것을 참조하여, 그 뒷날의 폐단을 예방하고 풍속을 바로잡기 위하여 종사주의 내명(內命)과 일동의 서약으로써 이상의 조항을 제정”[52]했다고 밝혔다. 남녀의 분리를 철저히 했던 이 경향은 은부모시자녀법(恩父母侍子女法)에도 반영되었다.[53] 소태산은 박공명선의 유언을 배려하여 그의 친녀 성성원의 은부가 되어 주었다. 그러나 “남녀 계통의 관계가 없이 혼합으로 결의함에 이르러서는 다만 종사주에 한할 뿐이요 이외에는 절대 허락하지 아니함”[54]이라고 공표함으로써, 이외의 은부녀, 은모자 간 결의는 불허하였다. 철저한 남녀 구별은 불법연구회 시대 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소태산의 공표로부터 9년이 지난 1939년(원기 24), 『회보』 제53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성과 남성 간의 엄격한 교제를 강조하고 있다.

51) 『회보』 10호(1934년 8월 19일); 원불교기록유산사업단 편, 『원불교 기록유산 총서』 제7권, 원불교출판사, 2023, 521~523쪽.
52) 『회보』 10호(1934년 8월 19일); 원불교기록유산사업단 편, 『원불교 기록유산 총서』 제7권, 원불교출판사, 2023, 525쪽.
53) 은부모시자녀법은 교도 가운데 재가출가를 막론하고 공부와 사업을 서로 권장하며 정신과 육신을 서로 보호하기 위해, 서로 처지가 적당하고 뜻이 맞는 사이에 법규의 정한 바에 따라 특별히 은부자(恩父子)와 은모녀(恩母女)의 의(義)를 맺어 한 가족의 정의(情誼)로써 일생토록 보살핌과 봉양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한다. 원광대학교, 『원불교대사전』, 원불교100년기념성업회, 2013, 857-858쪽.
54) 『월말통신』 33호(1930년 10월); 원불교기록유산사업단 편, 『원불교 기록유산 총서』 제5권, 원불교출판사, 2023, 252-255쪽.

> 남녀 교제 문제에 대하여 예로부터 우리 반도는 예절이 대단 엄숙하였으며 동양 도덕의 극치를 자랑하던 곳이였으나 최근 세태가 달라져서 엄격하던 그 장벽이 자연 허물어지고 자유 활발한 남녀교제가 시작된 지도 벌써 수십 년 전 일로서 이제 새삼스럽게 그 장벽을 쌓을 수도 없는 일이요 또는 그러할 필요도 인정치 아니하는 바이나 교제하는 데에도 아무쪼록 진실 정중히 하야 남녀 상호간 실례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 도덕가에서 취하는 가장 적당한 태도라 할지니 제군은 마땅히 이에 유의하여 남녀의 교제를 엄숙히 하며 교단의 기강을 진작함에 노력하기 바라는 바이다.[55]

그런데, 당시의 이 경향을 사회문화적 배경 위에서 확장하여 조망하면 조금 다른 양상이 발견된다. 배홍철은 유교 경전인 『예기』에서 시작된 '남녀칠세부동석' 담론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그는 근현대 신문기사를 바탕으로 '남녀칠세부동석'의 담론을 탐구했는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바로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사이에는 남녀칠세부동석과 여성의 권리 신장이라는 두 양상이 이항대립의 구조를 보인다는 점이다. 당시 여성의 '해방'은 남녀칠세부동석의 담론을 축소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남녀의 분리와 구별은 구태의연한 풍습일 뿐이며 이 문화를 약화시킬 때 여성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당시 다수의 기사를 통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 주장들은 1930년대부터 남녀공학, 즉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56]

그렇다면 불법연구회가 단조직과 관규 등을 통해 보였던 남녀 분리는 당시 나타나던 남녀공학의 확산 추세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질까? 이 시기 남녀공학이 확산했던 양상은 "제도·정책적으로는 별학을 원칙으로 하면서 1920-30년대에 들어 남녀를 한 공간에서 교육하는 공학이 점차적으로 늘어나"[57]던 것이었다. 즉 남녀공학이 증가하고는 있었으나 동일한 교육과정을 남녀가 한 자리에서 이수하는 방식이 모든 남녀공학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었다. 즉, 당시 우리나라에는 남녀칠세부동석 담론, 그리고 여성의 권리 신장의 담론이 혼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학교의 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불법연구회는 당시 남녀문제를 일으키던 신흥종교들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의 구별과 분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남녀권리동일'과 같은 사요 실천의 요목들을 제정함으로써 구습을 지양하고

55) 『회보』 제53호(1939년 3월).

56) 배홍철, 「남녀칠세부동석의 수사학: 국내 신문 기사(1920-2019)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학』 43-4, 2020, 211-218쪽.

57) 이윤미·김명희, 「해방이전 여학생 교육에서 남녀별학과 그 성격」, 『교육사학연구』27-2, 2017년, 158쪽.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단 조직의 기준을 성별의 구분에 두었지만, 한편으로는 근대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문제점들, 즉 성별의 다름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를 지양하는 담론도 함께 제시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교리적으로는 재래의 관습을 철폐해 나가면서도, 단 조직과 운영의 측면에서는 남녀 구분의 시대적 요구에 충실함으로써 일제의 탄압을 피하고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사회문화적 변화들은 불법연구회 시대의 그것과 매우 다르다. 물론 일부 신흥종교가 남녀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최근까지 일어난 일이었다. 한편 근대 한국에서 여성의 성역할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문제의식은 이제 여성의 안전 보장, 돌봄 노동의 편중성 같은 문제로 변주되고 있다. 그리고 젠더 간의 갈등을 공존과 연대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과거 불법연구회가 '질서'와 '혁신'을 병행하며 교법정신과 운영의 방향을 구축했다면, 이제 원불교의 과제는 성별에 연관한 바른 인식과 윤리적 실천, 나아가 공존과 연대의 모범적 사례를 제공하는 데에 있을 것이다.

2. 재가·출가 개념의 원형

『통치조단규약』에서는 정수위단, 예비수위단, 전무출신 실행단, 전무출신 기성단, 거진출진단, 보통단 등 여섯 가지 유형의 단 조직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눈에 띄는 용어가 있다. 바로 '전무출신'과 '거진출진'이다. 불법연구회는 본래부터 '전무출신'과 '거진출진'을 구분한 것일까? 그리고 당시의 '전무출신'과 '거진출진'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무출신'이나 '거진출진'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먼저 현재 통용되는 개념들의 정의와 용례를 살펴보자. 『원불교대사전』에서 '전무출신'은 원불교 교단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 노력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원불교의 출가교역자를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된다.[58] 그리고 「원불교 교헌」에서는 "출가교도로서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교단에 공헌하는 자"로 설명된다. 한편 '거진출진'은 원불교의 재가교도로서 <교규>의 정한 바에 따라 본교에 공헌하는 자로 정의되며,[59] 「원불교 교헌」에서는 "재가교도로서 공부와 사업이 출중하여 원성적 정5등 이상인 자로 그 공덕이 항상 드러나는 이라야 한다."라고 설명되고 있다.

현재 통용되는 이 정의들을 보건대, 전무출신과 거진출진은 출가와 재가의 기준을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속을 벗어나 공부와 사업에 온전히 헌신하는 출가자로서 전무출신, 그리고 세속 생활을 영위하면서 공부와 사업을 수행하는

58) 원광대학교, 『원불교대사전』, 원불교100년기념성업회, 2013, 981쪽.
59) 원광대학교, 『원불교대사전』, 원불교100년기념성업회, 2013, 39-40쪽.

재가자로서 거진출진이 제도적, 개념적으로 정착되어 온 것이다. 두 개념 간의 이와 같은 차이는 전무출신 중심의 교단 운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현행 규정을 살펴보자.

<출가교화단 규정>
제 3 장 단장· 중앙
제8조(총단장) 출가교화단의 총단장은 종법사가 된다.

<교당교화단 규정>
제 3 장 단장· 중앙
제9조(총단장) 교당의 총단장은 교감(주임)교무가 된다.[60]

출가교화단의 총단장은 종법사가, 교당교화단의 총단장은 교감(주임)교무, 즉 출가자인 전무출신이 하도록 하고 있다. 재가자의 공부와 사업을 출가자가 관리, 감독하는 형태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 차이가 처음부터 뿌리내린 것은 아니었다. 과거에는 전무출신과 거진출진, 출가와 재가의 개념과 의미가 지금과 같지 않았다. 소태산은 『조선불교혁신론』을 통해 재래의 조선불교가 출세간 승려를 본위로 했던 점을 비판하며 동등한 교역자 제도를 정립하려 했고, 그래서 불법연구회에서 재가와 출가, 거진출진과 전무출신은 동등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출가 중심의 전통 불교와 달리, 불법연구회의 거진출진은 전무출신과 동일한 주도성과 적극성을 담보하며 불법연구회의 공부와 사업에 동참하는 사람이었다.

1917년(원기 2), 남자 정수위단이 처음 조직되었다. 그리고 2년 후인 1919년(원기 4) 7월 26일, 소태산은 법인성사를 거쳐 아홉 제자에게 법명과 법호를 하사하였다.[61] 이때까지만 해도 재가와 출가 개념이 구분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소태산은 1922년(원기 7)부터 1923년(원기 8)에 이르는 동안 회원들의 유공 성적을 발표하였다. 이때 사용한 용어가 '전무노력자'와 '전무주력자'이다.[62]

주목할 부분은, 이 기간에 발표된 '전무노력자'와 '전무주력자'들이 현재 통용되는 의미의 '출가자'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1922년(원기 7)-1923년(원기 8) 사이의 전무노력자(전무주력자) 명단에 들어간 김혜월, 이청풍, 김월봉은 재가자이다.

60) 『원불교 헌규집』, https://won.or.kr/(검색일: 2026. 9. 22.).
61) 일산 이재철(一山 李載喆)·이산 이순순(二山 李旬旬)·삼산 김기천(三山 金幾千)·사산 오창건(四山 吳昌建)·오산 박세철(五山 朴世喆)·육산 박동국(六山 朴東局)·칠산 유건(七山 劉巾)·팔산 김광선(八山 金光旋)·정산 송규(鼎山 宋奎).
62) 「불법연구회 창건사」, 『회보』 제44호(1938년 5월).

‘전무노력자’와 ‘전무주력자’에 재가자가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출가와 재가 개념을 기준으로 전무출신과 거진출진을 구분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일 년 후인 1924년(원기 9) 4월 29일, 소태산은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통해 대외적으로 회상을 공개했다. 이때까지도 재가와 출가 개념은 미분 상태에 있었다.[63]

‘전무출신’이란 용어가 출가 중심의 신분상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24년(원기 9) 익산 총부 건설 이후로, 고향을 떠나 본관에서 거주하기로 한 이들을 ‘전무출신’으로 호명하면서부터다. 1925년(원기 10) 4월 26일에 남자 정수위단의 제1차 보궐 및 대리 조직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역을 통해 재가와 출가 개념의 분화가 이 시기에 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 원기 십년 사월 이십육일 남자 정수위단 제일차 보결 및 대리조직.
> 감방 이순순 대리에 주산 송도성. 손방 박세철 보결에 도산 이동안. 이방 박동국 대리에 혜산 전음광. 곤방 유건 대리에 의산 조갑종.[64]

남자 정수위단을 이렇게 개편한 이유에 대해, 후일 『圓佛敎72年總覽』에서는 “이산 이순순, 육산 박동국, 칠산 유건은 생존하였으나 재가하야 수위단의 직무를 이행치 못하게 되었으므로 수년전에 송도성, 전음광, 조갑종 3인으로 각각 그 대리를 정한 바 역시 만 6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정식대리인으로 인증”[65]했다고 설명한다. 즉 이산, 육산, 칠산은 출가가 아닌 재가였기 때문에 정수위단에 포함될 수 없어서 대리를 정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재가와 출가 개념이 이때 신분상의 차이를 기준으로 삼았음을 의미했을까?

1927년(원기 12), 『불법연구회 규약』이 발표되었다. 『불법연구회 규약』에 ‘재가 공부인’과 ‘출가 공부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장진영은 이 구분이 ‘신분상의 차이’가 아닌 ‘공부인의 처소(처지)’에 따라 ‘재가 공부인’과 ‘출가 공부인’을 구분한 것이라고 말한다.[66][67] 『불법연구회 규약』에는 ‘연구인 출가 규약’이 수록되어 있다. ‘연구인이

63) 김현승, 「불법의 대중화를 위한 거진출진 제도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107, 2026, 172쪽.
64) 원불교정화사, 「역대 수위단보」. 『원불교 교고총간』6, 원불교출판사, 1994, 11쪽.
65) 원불교칠십이년총람편집위원회, 『圓佛敎七十二年總覽』, 원불교창립 제2대 및 대종사탄생백주년 성업봉찬회, 1991, 144쪽.
66) 장진영, 「원불교 교역자 제도 변천사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46, 2010, 195쪽.
67) <재가 공부인 응용할 때 주의사항>
1. 응용하난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일.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와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일.
3. 노는 시간이 잇고 보면 취지 · 규약 · 경전 연습하기를 주의할 일.
4. 취지 · 규약 · 경전 연습하기를 다- 마친 사람은 문목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일.

본가(本家)를 떠나 선원에 영원히 거주하기로 하면, 12개월 입선 후에 회중 공의(公議)를 얻어 출가 원서를 받기로' 한다는 내용, '출가 원서를 제출할 때에 출가인의 생장(生長)의 시종(始終)을 알만한 자로 보증인을 세우고, 자기 생활 방침의 사유서와 당인(當人)의 관계인 허가 증서를 첨부하여 보고하되, 만일 1건이라도 부족한 경우가 있고 보면 출가 원서를 반려(反戾)'한다는 내용이다.[68] 이 시기에 '출가'의 절차가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 규약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바로 출가에 대한 설명이다. 『불법연구회 규약』에서는 본가를 떠나 선원에 거주하는 것이 '출가'라고 설명하고 있다. 세속의 모든 인연을 놓아두고 종교적 성취를 위해 홀연히 떠나가는 것이 아닌, 익산 총부에 머물며 공부와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출가'였다. 즉, 당시의 '출가'와 '재가'는 공부를 하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본가에 머무를 때는 '재가', 선원에 머무를 때는 '출가'였으니, 재가와 출가를 막론하고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공부와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는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를 두고 "서로서로 도움이 되고 바탕이 되어 재세 출세의 공부인에게 일분 일각도 공부를 떠나지 않게 하는 길"[69]이라고 한 소태산의 신념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후

5. 석반을 먹은 후에 가산에 대한 사무가 혹 잇스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 잇든지 야반청신(夜半淸晨)이든지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야 염불하기를 주의할 일.
6. 모든 사무를 처리한 후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야 보되, 정신수양과 사리연구와 작업취사와 신·분·의·성이 처리건에 골라 마젓는가 대조하며, 불신·탐욕·나·우에 범과가 되얏난가 생각하여 보며, 솔성요론과 계문에도 범과가 되얏난가 생각하야 대조하기를 주의할 일.

<재가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셔 하난 책임>

1. 우기 응용 주의사항을 지내나셔 하시든지 교무부에 오고 보면 그 사항에 경과한 일을 일일히 문답하기를 주의할 일.
2. 엇더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잇고 보면, 그 감각된 사유를 별지(別紙)에 등서(謄書)하여 교무부에 허가엇기를 주의할 일.
3. 엇더한 사항에 대하야 특별히 의심나난 일이 잇고 보면, 그 의심된 사유를 별지에 등서하야 교무부의 양해엇기를 주의할 일.
4. 매년 (三冬)이 되고 보면 엇더한 방면으로든지 비용금을 준비하야 가지고 2개월이든지 3개월이든지 선원에 와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기를 주의(注意)할 일,
5. 매월 (三六)일난 아모리 급한 사무가 잇다 하야도 전기(前期)하야 처결하여 놋고 그 날이 되고 보면, 반닷이 그날은 온전히 교무부에 와셔 공부에 대한 일만 주의할 일.
6. 교무부를 단여갈 때에난 엇더한 감각(感覺)이 되얏난지 엇더한 사항에 의심업시 밝아젓난지 조사하여 본 후(後)에 어느 방면으로 이로움이 잇는가 업는가 생각하여 보기를 주의할 일.

<출가 공부인의 책임>

1. 공부할 때에 비용금이 염녀 업난 사람은 매년 동하 6개월은 선원에 와서 각항 공부 진행하기를 주의할 일.
2. 춘추(春秋) 6개월은 회중(會中)사업도 대강 안보(安保)하며, 사가도 대강 안보하며, 한가한 때가 잇고 보면 강산을 구경하야 정신을 소창(蘇暢)하며, 모-든 교회 선지식으로 조차 의견 교환하기를 주의할 일.
3. 공부할 때에 비용금이 업난 사람은 춘추 6개월에 비용금을 장만하여 가지고, 동하 6개월은 선원에 와서 각항 공부 진행하기를 주의 할 일.

단, 회중에서난 비용금이 무한 공부인의 정도를 보와서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모든 일에 표준이 될 만한 사람이 잇고 보면, 회중(會中) 공의(公議)를 얻어 공부하는대 곤란함이 업게 하여 주기로 함.

68) 『불법연구회 규약』(1927).
69) 『정전』 제3 수행편 제3절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의 관계

1928년(원기 13)에는 ‘재가선(在家禪)’, ‘출가선(出家禪)’이란 표현도 등장했다.

> 매일 일기표를 동년同年 7월경에 작성하여 우기(右記) 재가응용주의사항의 실행 여하와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실행 여하와 삼십 계문의 범불범(犯不犯)과 본회 사업에 정신이나 육신이나 전곡으로써 근고(勤苦) 또는 혜시한 성적 유무와 공부방면 사업방면 생활방면에 대한 의견유무를 매일 속임 없이 조사하여 재가선(在家禪)과 출가선(出家禪)을 물론하고 일일시시로 실행케 하였으며 또는 매월로 대조하고 매년으로 대조하여 자기 성적 진축(進縮)을 알게 하였나니, 이 일기법 실행으로부터 자기가 완전히 자기를 가르치게 되었으며 재가출가를 통하여 진실한 훈련을 받게 되었다.[70]

‘재가응용주의사항’ 및 ‘재가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을 비롯한 여러 공부 과목들을 속임 없이 조사하여 ‘재가선’과 ‘출가선’을 빠짐없이 실행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재가출가’를 통하여 진실한 훈련을 받게 되었다고도 하고 있어, “재가공부는 상시훈련을, 출가공부는 정기훈련을 말하는 것”[71]임을 파악할 수가 있다. 보고서의 상황맥락을 비추어 볼 때 ‘재가선’과 ‘출가선’, 그리고 ‘재가출가’라는 표현은 신분의 구분에 따른 전무출신과 거진출진이 아닌,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의 병행을 의미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전무출신’의 개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다음은 같은 해인 1928년(원기 13), 전무출신실행단이 조직되었다는 기사다.

> 3. 제5회 전무출신실행단의 조직
> 4월 2일(양력 5월 20일)에 농공부 박대완 씨 외 8인의 실행단의 가입신청서를 수리하여 4월 6일(양력 5월 24일) 오후 8시에 예식을 거행한바 단원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
> 중앙대표: 박대완
> 단원: 박노신, 정일성, 김병철, 이호춘, 성정철, 송봉환, 전종환, 권대호
> 사업표준: 인재양성소 설립에 합력
>
> 위 단은 농업원 및 농공단원에서 청소년 중 예기銳氣가 많은 회우로만 성립된 바이니 실로 본회의 희망단이라 하겠노라.[72]

70) 「교무부 제1회 공부인훈련보고서」, 『시창13년도 사업보고서』(1928).
71) 장진영, 「원불교 교역자 제도 변천사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46, 2010, 196쪽.
72) 『월말통신』 제1호(1928년 5월); 원불교기록유산사업단 편, 『원불교 기록유산 총서』 제1권, 원불교출판사, 2023, 33~35쪽.

고시용[73]과 장진영[74]은 위 기사가 전무출신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표출한 첫 기록이라고 보고 있다. 전무출신의 직위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지만, 공부인의 처소를 기준으로 재가와 출가를 구분하는 방식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3년 후인 1931년(원기 16년)에도 이 양상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해에 여자 수위단 시보단이 조직되었으며, 당시 명단은 '건방 이동진화, 감방 장적조, 간방 최도화, 진방 양하운, 손방 전삼삼, 이방 이청춘, 곤방 정세월, 태방 박사시화, 중앙 이공주'였다. 만약 이 시기에 신분상의 차이를 기준으로 재가와 출가를 엄격히 구분하였다면, 현재 재가로 분류되어 있는 최도화, 양하운, 전삼삼이 여자수위단 시보단에 편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이 당시의 여자 수위단 시보단은 출가와 재가가 혼재된 상태로 조직되었다'고 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전무출신'이 제도적 정착을 시작한 한편, 아직 출가와 재가를 신분의 차이를 기준 삼아 구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1925년(원기 10)의 '남자 정수위단 제1차 보궐 및 대리조직'에서 이순순, 박동국, 유건이 '재가함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도, 이들이 '재가자'의 '신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남자 정수위단에서 제외되었음을 의미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이 머무르는 장소가 익산 총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위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기 어려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소태산이 구상한 출가·재가 제도는 과거 불교 전통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었다.[75]

1931년(원기 16), 소태산은 『통치조단규약』을 발표했다. 『통치조단규약』에는 단의 조직을 정수위단, 예비수위단, 전무출신 실행단, 전무출신 기성단, 거진출진단, 보통단으로 한다는 설명이 있다. 그리고 1932년(원기 17) 저술된 『보경육대요령』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재가'는 '상시(常時)'로, '출가'는 '정기(定期)'로 대치되었다. 이후 재가와 출가라는 용어를 '공부인의 처소'의 의미로 사용한 사례는 공식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1932년(원기 17)경에 이르러 '출가'라는 용어가 신분상의 개념으로 공식 수용되었고, 이후 이는 '전무출신'과 동일한 의미로 정착되었다.[76] 다음은 1938년(원기 23) 『회보』에 실린 내용으로, 현재 통용되는 '전무출신' 및 '거진출진'과 유사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 제2절 전무출신부
>
> 전무출신부는 본회 창립을 위하야 정신적이나 육신적으로 전무 노력하는 자를 알니기 위한 명부이니 그 자격은 좌(左)에 해당한 자로 함

73) 고시용, 「원불교 전무출신에 대한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48, 2011, 54-55쪽.
74) 장진영, 「원불교 교역자 제도 변천사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46, 2011, 195쪽.
75) 김현승, 「불법의 대중화를 위한 거진출진 제도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107, 2026, 183쪽.
76) 장진영, 「원불교 교역자 제도 변천사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46, 2011, 196-197쪽.

1. 사가에 구속이 없이 그 임무를 전일 이행하는 자
2. 임무의 취지가 급료에 있지 아니하고 오즉 의무적으로써 하는 자
3. 회중 명령이 있을 시는 호오를 불택하여 항시 그 지정 임무에 노력하는 자
4.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야 본회 외에는 마음 흐르는 곳이 전연 없는 자
5. 공부로나 사업으로나 거래간 공덕이 항시 드러나는 자
6. 전무출신부 내에 갑 을 병 정 무 5급을 두되 다년간 경험으로써 이상 다섯 조항에 충실하야 소호도 흠이 없는 자는 갑이요, 그 차는 우열을 따라 을 병 정 무로 정하며, 무에도 불급한 자는 비록 현직 임무에 있다 할지라도 본 자격을 상실하였음으로 차부에서는 제명함

제3절 거진출진부
거진출진부는 회원 중 진세의 모든 향락을 사절하고 오즉 본회의 공부와 사업에 락을 옴긴자를 조사하기 위한 명부이니 그 자격은 좌(左)에 해당한 자로 함
1. 저 세상에서 수용하는 호의호식을 불고하고 이 공부 이 사업을 위하야 험의악식이 될지라도 영원 계속하는 자
2. 저 세상에서 수용하는 재색의 락을 불고하고 이 공부 이 사업을 위하야 담박 또는 독신적 생활을 할지라도 영원히 계속하는 자
3. 저 세상에서 고유의 명예와 권위를 불고하고 학업을 영원 계속하는 자
4. 저 세상에서 좋아하는 안일을 불고하고 육신과 정신에 어떠한 고통이 될지라도 본회 규칙 생활을 영원 계속하는 자
5. 공부계로나 사업계로나 항상 지성 조력하야 거래간 공덕이 많이 들어나는 자
6. 거진출진부 내에 갑 을 병 정 무 5급을 치하되 다년간 경험자로써 이상 다섯 조항에 충실하야 소호도 흠이 없는 자는 갑이요, 그 차는 우열을 따라 을 병 정 무로 정함
7. 거진출진부의 회원으로서는 만 10년의 성적이 유한 자는 차부 등록일부터 전무출신으로 인정함을 득함
8. 본 부는 공부와 사업에 대한 모든 정도가 전무출신에 비하야 차이가 없으나 오즉 어떠한 형편에 의하야 본회로부터 직접 임명의 책임이 없는 자에 한함.[77]

흥미롭게도, 거진출진은 ‘험의악식’, ‘담박 또는 독신적 생활’, ‘학업을 영원 계속’ 할 정도로, 공부와 사업에 열성을 가진 사람으로 설명된다. 거진출진은 본래 공부와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 전무출신과 차이를 가지지 않았다. 단지 ‘어떠한 형편에 의해’ 거진출진부에 들어갈 뿐이었다. 애초 불법연구회의 ‘출가’와 ‘재가’는 애초 머무르는 장소의 여부에 따른 개념이었으며, 이러한 개념적 뿌리에서 출발한 ‘전무출신’과 ‘거진출진’ 또한 전통 불교에서와 같이 신분의 구분과 차별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었다.

77) 『회보』 제45호(1938년 6월).

구타원 이공주가 소태산에게 ‘서울을 떠나 총부로 전무출신할 뜻을 말씀드렸다’[78]는 기록이 남아 있다. 총부로 전무출신을 한다는 이 말은 공부와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익산 총부로 이동해 오는 것, 즉 정기훈련에 매진하려는 의지를 함의한다. 이와 같이, 소태산이 본래 의도했던 ‘출가’와 ‘재가’는 누구나 대등한 신분을 유지하며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을 두루 병행하는 것이었다.

『통치조단규약』에서 정수위단, 예비수위단, 전무출신 실행단, 전무출신 기성단, 거진출진단, 보통단을 구분 조직한 데에는 분명 전무출신과 거진출진의 구별이 전제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때의 구별은 회원 개개인의 삶의 양상을 고려한 것으로, 신분의 위계가 아닌 활동 방식의 다양화에 따른 조직이었다.

중요한 것은 전무출신과 거진출진의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든 불법연구회의 공부와 사업에 모든 힘을 다하여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출세간 본위의 전통 불교를 혁신하여 생활종교를 표방했던 소태산의 본의가 지금은 어떻게 계승되고 있으며 이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인지,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Ⅳ. 나가며

이상과 같이 소태산 대종사 재세시의 단의 역할과 의미, 그리고 단 조직의 특성을 『통치조단규약』「원칙」을 통해 탐구하였다. 본 연구가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무기관이 직접적인 교단 운영을 주도한다면, 단은 상무기관에서의 직위나 직급에 관계 없이 ‘단장’과 ‘단원’의 관계에서 불법연구회의 정신과 방향을 탐구하고 훈련하는 곳이었다. 이 두 기관은 서로 보완 및 보조하는 형태로 병존하는, 불법연구회의 필수 양대 산맥이었다.

둘째, 불법연구회의 핵심 통치기관인 수위단은 소태산의 정신을 하위 단원들에 그대로 계승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때 ‘통치’는 교화와 통치를 통합한 개념이었으며, 단원들이 제안한 의견이 단원회, 단장단회, 정수위단회를 거쳐서 의결 및 시행되는 과정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이단치교’의 주체, 즉 ‘통치’를 실행하는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점은 불법연구회가 담지한 공화제의 특징이었다.

셋째, 소태산이 단을 조직할 때 남녀구별의 원칙을 둔 이유에는 당시 우리나라에 깊이 스며들어 있던 유교적 관습, 그리고 백백교를 비롯한 유사종교들의 만행 등 시대적 배경이 존재했다. 다만 이 시기에 남녀공학이 확산된 바 있는데, 우리나라에 혼재하던 남녀칠세부동석 담론, 그리고 여성의 권리 신장 담론이 그 원인이었다고 추정된다.

78) 원불교 제일대 성업봉찬회, 『圓佛敎 第一代 創立有功人 歷史』, 원불교 출판사, 1986, 25쪽.

불법연구회의 경우 조단의 기준을 남녀 구별에 두되 사요 실천의 요목들을 제정함으로써 구습을 타파하고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했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통치조단규약』에서 제시한 단의 유형들은 '전무출신'과 '거진출진'의 구별을 전제하고 있으나, 당시의 '전무출신'과 '거진출진'은 지금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애초 '재가'와 '출가'는 공부인의 처소와 처지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이었다. 가령 정기훈련의 차원에서 익산 총부에 머물면 '출가'로 정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무출신의 신분이 처음부터 세속을 벗어난 출가자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으며, 지금 통용되는 '전무출신'과 '거진출진'의 의미는 『통치조단규약』 발행으로부터 7년 후인 1938년(원기 23)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통치조단규약』 「원칙」에서 유의미한 점 한 가지를 소개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바로 '절부'에 관한 것이다. 소태산은 절부와 단증을 받은 단원은 이를 중히 보관하였다가, 만일 다른 단으로 이전되는 경우 기존 절부와 단증을 관할 단장에게 납부하도록 했다. 그리고 단원의 이전에 따라 절부 단증을 돌려받은 단장은 이전 단증을 취소하고 새 단증과 절부를 보결 단원에게 전수해야 했다. 절부를 받은 단원이 혹 절부를 잃어버리는 경우, 즉시 그 사유를 관할 단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며, 단장은 사유를 조사한 후 교무부에 보고했다.[79]

절부와 단증의 관리에 대한 소태산의 엄격한 지침은, 불법연구회에서 단이 가졌던 비중과 중요성을 짐작하게 한다. 절부와 단증은 불법연구회 회원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것이었으며, 생사를 초월하여 정신개벽을 실천하고자 한 구인 단원의 백지 혈인(白指血印) 정신을 함축한 매개물로서 그 의미를 가졌을 것이다. 절부와 단증을 잘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단원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자, 공부와 사업을 실행에 옮기는 현실적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교화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어느 정도인지 비판적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79) 제37조: "절부와 단증을 받은 단원은 중히 보관하엿다가, 만일 타 단으로 이전되난 경우는 기(其) 절부와 단증을 관할 단장의게 납부함."
제38조: "단원의 이전에 대하야 절부 단증을 수한 단장은 이전 단증은 취소하고 새 단증과 절부는 보결 단원의게 전수함."
제39조: "절부를 수한 단원이 혹 유실한 경우는 즉시 기(其) 사유를 관할 단장의게 보고하고, 그 단장은 기 사유를 조사하야 교무부에 보고함."
제40조: "교무부에서는 절부 유실의 보고를 접할 시는 닷이 그 내용을 조사하야, 엇지 할 수 업난 경우에서 (生)한 유실이면 이어니와, 만약 부주의에서 (生)한 유실이면 선유(善喩)로써 경계한 후 해(該) 단원 전부의 절부를 환수하야 취소하고 갱히 분급함."
제41조: "단원의 부주의에서 (生)한 절부 유실이 2차에 당한 시는 해 단원을 보통단으로 이정(移定)하고 그 단원을 보결한 후, 그 단 전부의 절부를 환수하야 취소하고 갱히 분급함."

참고문헌

1. 원전

『정전』(『원불교전서』, 원불교출판사, 1995)

『대종경』(『원불교전서』, 원불교출판사, 1995)

『정산종사법어』(『원불교전서』, 원불교출판사, 1995)

『대종경 선외록』, 원불교출판사, 1978.

『불법연구회 규약』, 불법연구회, 1927.

『불법연구회 회규』, 불법연구회, 1942.

2. 단행본

원불교 제일대 성업봉찬회, 『圓佛敎 第一代 創立有功人 歷史』, 원불교 출판사, 1986.

원불교기록유산사업단 편, 『원불교 기록유산 총서』 제1권, 원불교출판사, 2023.

원불교기록유산사업단 편, 『원불교 기록유산 총서』 제5권, 원불교출판사, 2023.

원불교기록유산사업단 편, 『원불교 기록유산 총서』 제6권, 원불교출판사, 2023.

원불교기록유산사업단 편, 『원불교 기록유산 총서』 제7권, 원불교출판사, 2023,

원불교정화사, 『원불교 교고총간』 제6권, 원불교출판사, 1994.

원불교칠십이년총람편집위원회, 『圓佛敎七十二年總覽』, 원불교창립 제2대 및 대종사탄생백주년 성업봉찬회, 1991.

원불교100년총람편집위원회 편, 『원불교100년총람』, 원불교출판사, 2017

3. 논문

고시용, 「원불교 전무출신에 대한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48, 2011.

고시용, 「원불교의 조직적 특성」,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55, 2013.

김현승, 「불법의 대중화를 위한 거진출진 제도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107, 2026.

배홍철, 「남녀칠세부동석의 수사학: 국내 신문 기사(1920-2019)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학』43-4, 2020.

원광대학교, 『원불교대사전』, 원불교100년기념성업회, 2013.

이윤미·김명희, 「해방이전 여학생 교육에서 남녀별학과 그 성격」, 『교육사학연구』27-2, 2017년.

이혜성, 『소태산의 신룡전법기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6.

장진수, 「불법연구회 교화단사 : 단조직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정신개벽』17, 2011.

장진영, 「원불교 교역자 제도 변천사 연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46, 2010.

장진영, 「불법연구회 의견제출제도 고찰」, 『한국종교』49, 2021.

전흥배, 「원불교 교화단훈련의 대전환」, 『원불교학』10, 2018.

4. 기타

『시창13년도 사업보고서』(1928).
『시창15년도 사업보고서』(1930).
『회보』 제44호(1938년 5월).
『회보』 제45호(1938년 6월).
『회보』 제53호(1939년 3월).
『회보』 제59호(1939년 9월).
<원불교 헌규집> (https://mis.won.or.kr/commjob/lawmgmt2/LawMain.jsp)